

서울특별시 동작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05
----------	------

제출년월일 : 2016년 4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동작아이존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아동청소년 사회복귀시설로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에게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2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동작아이존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294-74
- 시설규모 : 대지 215m², 건물 274,60m²(지하1층~지상2층)
- 준공일자 : 1975.08.12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만 6세이상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초등학생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6.07.01 ~ 2019.06.30)
- 위탁업무
 - 정서행동 장애아동을 위한 단기보호 및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정서행동 장애아동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
 - 기타 서울시에서 추가로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 소요예산 : 328백만원 (2016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9.7.1 ~ 2012.6.30 (3년,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 2차 : 2012.7.1 ~ 2014.6.30 (2년,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 3차 : 2014.7.1 ~ 2016.6.30 (2년,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직영으로 운영시 현재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는 시설 대체를 위해 추가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력·장비 등 전문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변하는 의료환경 및 지역사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한 경영평가 및 적격자 심의결과 : 적정
(보건정책과 2016.02.26.)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조직담당관 2016.03.21)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신선혜 (☎2133 - 7549)